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6. 21.(월) / 총 6매(본문4, 참고2)	
담당 부서	토지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정우진, 사무관 조현익, 주무관 김우중 • ☎ (044) 201-3400
	공공택지관리과	담 당 자	• 과장 최용현, 사무관 박장근, 주무관 박상용 • ☎ (044) 201-4524
보 도 일 시		2021년 6월 2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2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·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· 7월 2일부터 시행

- **준법감시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**
- **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, 정보누설·제공·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**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」 및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먼저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감사·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·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**준법감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·감독하고 조사하며,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**

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였다.

□ 준법감시관의 자격, 업무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자격 및 임명 >

- 준법감시관은 감사·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·검사·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.

< 주요업무 >

- 준법감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,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.
- 아울러, 위법·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.

< 권한 >

- 준법감시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.
-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, 준법감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□ 아울러,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한국토지주

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*에 필요한 '고유식별 정보(주민등록번호)'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.

*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주택·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(‘21.4.1 개정)

□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“준법 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·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”되었다면서,

○ “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·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,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다음으로,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하여,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○ 이에 지난 4월 「공공주택특별법」을 개정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*하고,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 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*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~5배 벌금,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(최대 무기징역), 재산상 이익 몰수·추징 등
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

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,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·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.

- 우선,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·제공·부정취득 여부, 국가·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하였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하고,
-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, 국토정보시스템(NSDIS),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,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.
- 또한, 30만㎡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·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'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'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“이번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”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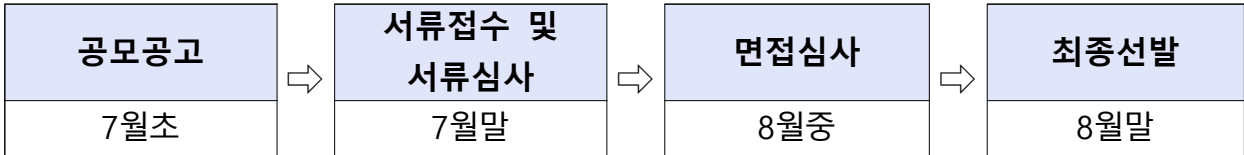
- “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조현익 사무관(☎ 044-201-3400), 공공택지관리과 박장근 사무관(☎ 044-201-45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참고

준법감시관 공모일정, 지위·지원조직 및 업무별 처리절차

□ 공모 일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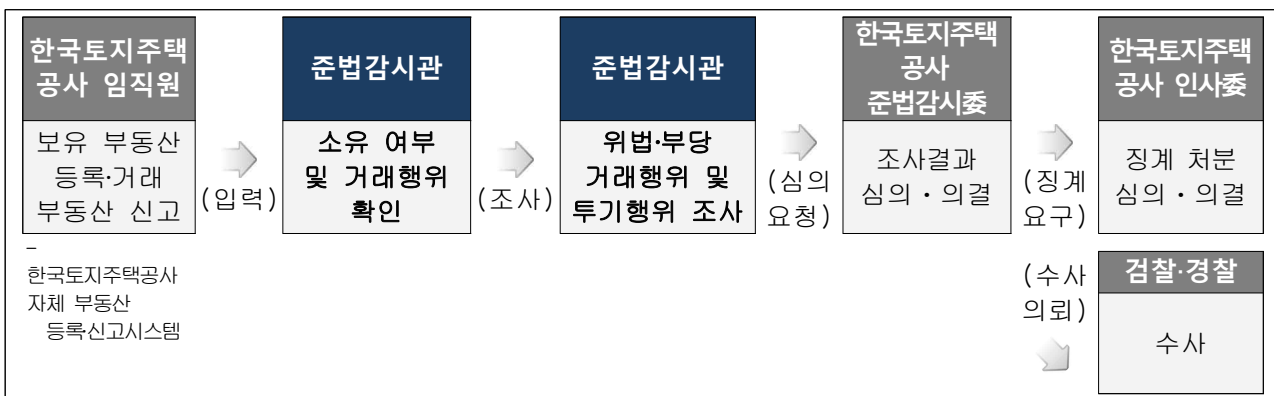
□ 지위·지원조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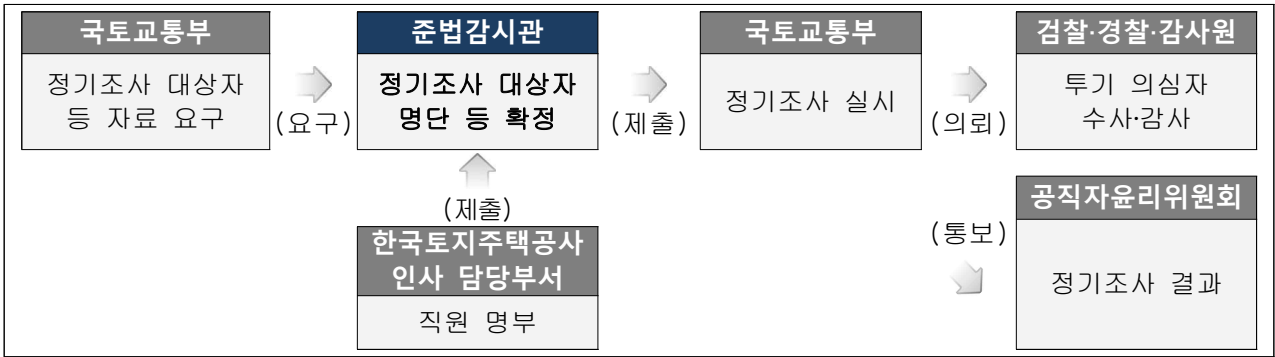
* 준법윤리감시단은 준법감시관의 지원조직으로, 준법감시관은 준법윤리감시단의 장(長)이 됨

□ 업무별 처리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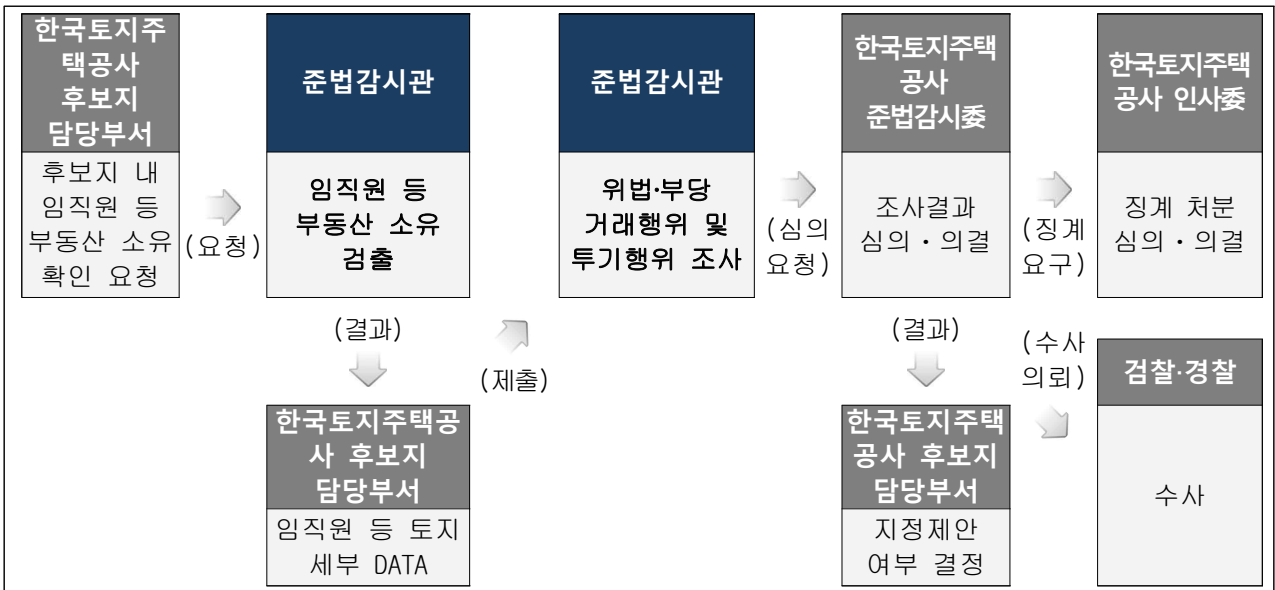
○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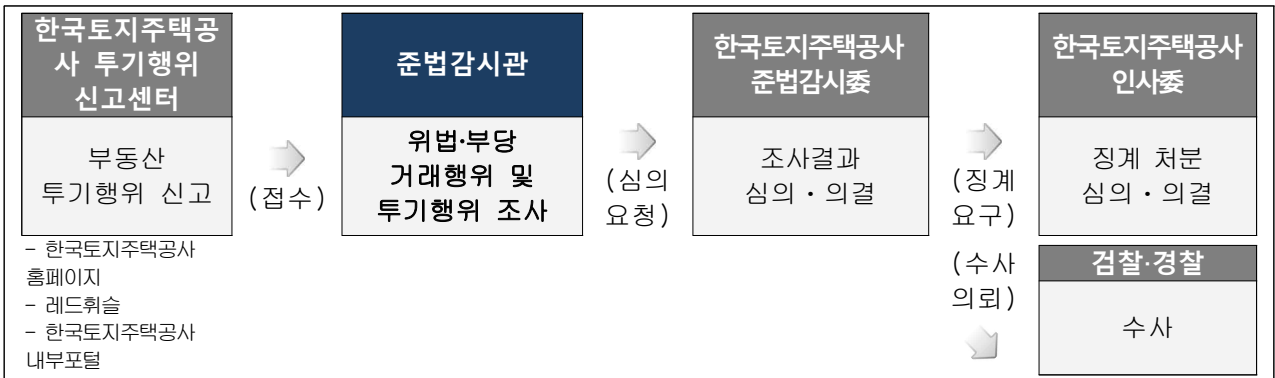
○ 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에 대한 지원·협조



-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·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
 - 후보지 지정 전 임직원 등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 절차



- 투기행위 신고센터 신고 접수시 조사 및 처리절차



- 임직원 및 투기의혹 임직원 가족에 대한 보상배제 절차

